

## 12. 기금운용심의회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자금 운용의 합리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 각 회계별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,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준수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21.6.22.개정)

제 2 조 (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
3.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제 2 장 구 성

제 3 조 (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2022.04.22.개정)

② 심의회는 총장, 기획관리처장을 포함한 교원, 직원 및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,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고 그 밖에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한다. (2019.7.23.개정)(2022.04.22.개정)

③ 단, 외부전문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.

제 4 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직자의 경우에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 5 조 (간사) ① 심의회는 학교 교직원으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한다.

### 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회의)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위원 1/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
제 7 조 (의결)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 (소위원회)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9조 (비밀 유지) 위원들은 심의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 (회의록 작성)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한다.

### 제 4 장 보 칙

제11조 (기타) ①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준수한다.

②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례) 본 규정은 ①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(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)의 개정일(2018.5.29.)로부터 소급 적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0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